

「평창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3일 이범연 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17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-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따른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를 사전 예방하고, 주민 명예감독관의 행정 참여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..

2. 주요내용

가. 참여대상 사업장 적용(안제 2조)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한 주민생활에 밀접 하게 관련이 있는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, 배수로공사, 간이상수도공사, 보도블럭공사, 도시계획도로 공사, 마을회관공사, 공중화장실공사, 수해복구공사 등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-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3천만원 미만의 공사는 제외

나. 명예감독관 위촉·해촉(안 제4조)

- 사업지역 주민 중에서 읍·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.
- 착공 전에 2명 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
- 명예감독관 위촉 해제 대상자 규정 등
 - 1)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
 - 2)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
 - 3)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
다. 명예감독관의 자격(안 제5조)

- 관할지역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읍·면장이 추천한 사람
-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는 사람 규정.
 - 1)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
 - 2)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
 - 3) 건설공사 관련 단체·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 등

라. 명예감독관의 임무(안 제6조)

- 1). 공사착공시 :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
- 2) 공사시행시 : 시공의 적정성,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 및 민원 사항해결여부,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

마. 의견제시(안 제7조)

-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·개선사항을 발견시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,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개선 요구.

바. 주민설명회 개최(안 제8조)

- 공사설계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
- 군수는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시에도 검토 후 주민설명회 개최

3.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평창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주민 명예 감독관의 참여로 건설공사의 착공 및 시행과정에 대한 참여 및 감독으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부실시공 예방은 물론, 공사시행 과정중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시정·개선, 민원발생의 예방 및 신속한 해결 등 지역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